교육부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
2022년 기본계획

2022. 1.

교 육 부

(지역혁신대학지원과)

목 차

Ⅰ.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 ····· 1

Ⅱ. 그간의 성과 ····· 3

Ⅲ. 중점 추진방향 ····· 5

Ⅳ. 사업 주요내용 ····· 7

Ⅴ. 2022년도 평가계획 ····· 19

Ⅵ. 사업 관리 ····· 26

Ⅶ. 향후 추진 일정 ····· 32

Ⅰ.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

1 추진배경

□ 지방대학의 위기 가시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 가속화

○ **학령인구 감소,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** 및 **지역경제 침체**로 인해 **지방대학**이 가장 먼저 **위기**에 **직면**

※ '21년 미충원 신입생 40,586명 중 30,458명(75%)이 지방대학에 집중

○ **대학**은 **지역** 경제·산업·사회·문화 **발전의 기초**가 되는 **인적·물적 자원**의 **집약체**로서 **지방대학의 위기**는 **지역의 위기와 직결**

※ 대학생 1명당 월 100만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 → 대학생 1만 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 원의 손실 효과 ('19. 강원연구원 추산)

□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-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 필요

○ 현행 **개별대학 위주의 노력**으로는 **지역산업 현장**과의 **연계 등 지역 전체**의 **수요**와 **발전**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위기 타개 어려움

※ **대졸자 취업률(%)**: 수도권 69.0 > 비수도권 68.0 / **사업체 미충원율(%)**: 수도권 10.6 < 비수도권 11.9

○ 지역 내 대학들이 각각의 **강점**을 **결집**하고 **역할**을 **분담**하여 함께 **지역인재**를 **양성**하고, **대학**의 **역량**을 **지역**으로 **확장**하는 방안 모색 필요

□ 지역혁신을 위해 인재양성·활용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확립 시급

○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'**지역균형 뉴딜**' 등 **지역**의 **경제·산업체계**를 **뒷받침**하는 **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체계** 구축

○ **지자체**는 지역의 수요를 결집·조정하여 **인재양성**(대학)**과 수요**(일자리) **연계**로 **지역혁신체계 효과성 극대화**

❖ '**공유와 협력**'의 가치 하에 지자체,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이 **역량을 결집**하고, 지역혁신모델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위기 극복

2 주요 추진경과

□ 2020년

○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 관계자 회의 ('19.7월 ~ '20.2월)

○ 부총리 주재 충청권 간담회 개최 ('20.2.17.)

※ 강원권, 경상권, 전라·제주권은 서면으로 의견 수렴 ('20.2월)

○ 부총리 주재 202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·논의 ('20.1.17.)

○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 발표 ('20.1.20.)

○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('20.3.27.)

○ 선정평가(서면·현장평가) 실시('20.6.30. ~ 7.10.) 및 선정결과 발표('20.7.16.)

※ (단일형) 경남, 충북 (복수형) 광주·전남

○ 부총리 주재 플랫폼별 간담회 개최(경남('20.8.18.), 충북('20.8.20.), 광주·전남('20.9.4.))

○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0.12월, '21.6.1. 시행)

※ 지역혁신플랫폼 구축·지원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(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제도) 지정 근거 마련

□ 2021년

○ 2021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('21.1~2월)

※ 기존 플랫폼 의견수렴(1.12., 1.13., 1.19.), 지자체 관계자 및 대학 기획처장 영상 간담회(2.3.) 등

○ 2021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수립·공고('21.2.9.)

○ 부총리 주재 제1차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협의회('21.3.5.)

○ 21년 선정평가('21.4.26~4.30.) 및 선정결과 발표('21.5월)

※ (복수형 신규) 대전·세종·충남 (복수형 전환) 울산·경남

○ 21년 기존 플랫폼(경남, 충북, 광주·전남) 대상 연차평가 실시('21.6월)

○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·안내('21.7.22.)

※ 특화지역 지정신청 접수(7.22.~10.22.) → 특화지역 지정(12월, 광주·전남, 울산·경남, 충북)

○ 제1회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온라인 개최('21.9.13.)

○ 고등교육정책관 주재 지역혁신플랫폼 간담회('21.11.23.)

○ 지역혁신플랫폼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('21.12월)

□ 2022년

○ 2022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('22.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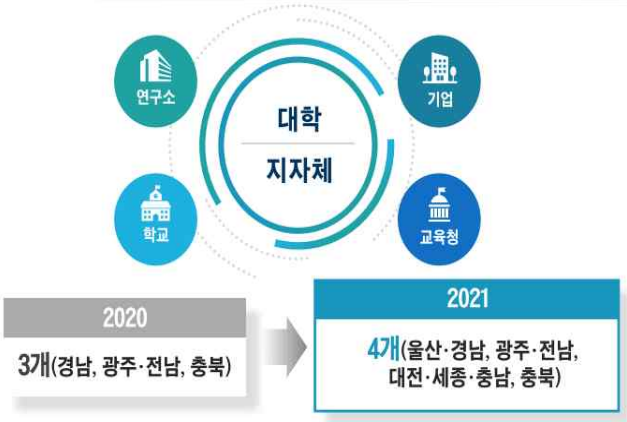
※ 기존 플랫폼 대상 간담회(1.17.), 지자체 과장급 간담회(1.19.), 지자체 및 대학 관계자 간담회(1.26.)

Ⅱ. 그간의 성과

1 기반구축 : 지역인재양성의 구심점으로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

○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**지역혁신플랫폼**(지자체, 대학,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체계) **구축 확대**

※ ('20년 1,080억 원) 3개 플랫폼, 4개 시·도 → ('21년 1,710억 원) 4개 플랫폼, 8개 시·도



지역	핵심분야
광주·전남	에너지신산업, 미래형운송기기
울산·경남	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, 스마트제조ICT, 스마트공동체, 미래모빌리티, 저탄소그린에너지
충북	제약바이오, 정밀의료·기기, 화장품·천연물
대전·세종·충남	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, 모빌리티 ICT

○ **정보통합관리망 구축** 등을 통해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인재양성 총괄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기제 마련

< 정보통합관리망 개요 및 사례>

- **(개요)** 중앙부처·지자체의 대학 관련 사업 및 지역 내 기관들의 보유자원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의 취합·공유, 사업 간 연계 등을 촉진
- **(사례-충북)**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데이터*를 집적·활용·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역량강화 등 지원

 * 대학, 기업, 지역혁신기관의 인력·장비·핵심기술·취업 및 창업정보 등 제공

- **(사례-울산·경남)**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정보를 4개 분야(대학정보관리시스템, 수요관리시스템, 신규사업정보관리, 성과관리시스템),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



【 충북 】



【 울산·경남 】

2 교육혁신 :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 마련

○ 공유대학 구축·운영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,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·복합 교육과정 운영, 강의환경 개선 등 **공유대학 운영 본격화**

구분	공유대학 모델
울산·경남 / USG 공유대학	스마트제조ICT, 미래모빌리티 등 8개 융합전공, 174개 교과목 개발·운영
광주·전남 / iU-GJ 공유대학	미래에너지 신산업(IP 융합전공) 등 5개 융합전공, 100개 교과목 개발·운영
충북/ Bio-PRIDE 공유대학	제약바이오 등 5개 융합전공, 113개 교과목 개발·운영
대전·세종·충남 / DSC 공유대학	모빌리티SW/AI, 자율주행시스템 등 8개 융합전공, 172개 교과목 개발·운영

○ **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제도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) 도입**('21.6월) 및 **지정**('21.12월)을 통해 지역별 고등교육혁신에 필요한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

<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>

■ 광주·전남, 울산·경남, 충북('21.12월 지정, '22. 3. 1. ~ '26. 2. 28.(4년간))

- **(공통)**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,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·실습·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
- **(광주·전남)**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(2분의 1 이내 → 4분의 3 이내)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

3 지역혁신 :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·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기여

○ 지역혁신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랩,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,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**취·창업 지원**



【 에너지신산업 창업플랫폼 구축(광주·전남) 】



【 프로젝트 랩 운영모델(충북) 】

○ 지역인재의 **지역정주**를 **지원**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내 혁신공간(국토부 도심융합특구 등) 간 연계 추진

※ (예시) 지역 내 산업·문화·주거를 복합 지원하는 혁신공간 조성(국토부) + 특구 내 오픈캠퍼스 운영을 통해 학생·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(지역혁신플랫폼)

Ⅲ. 중점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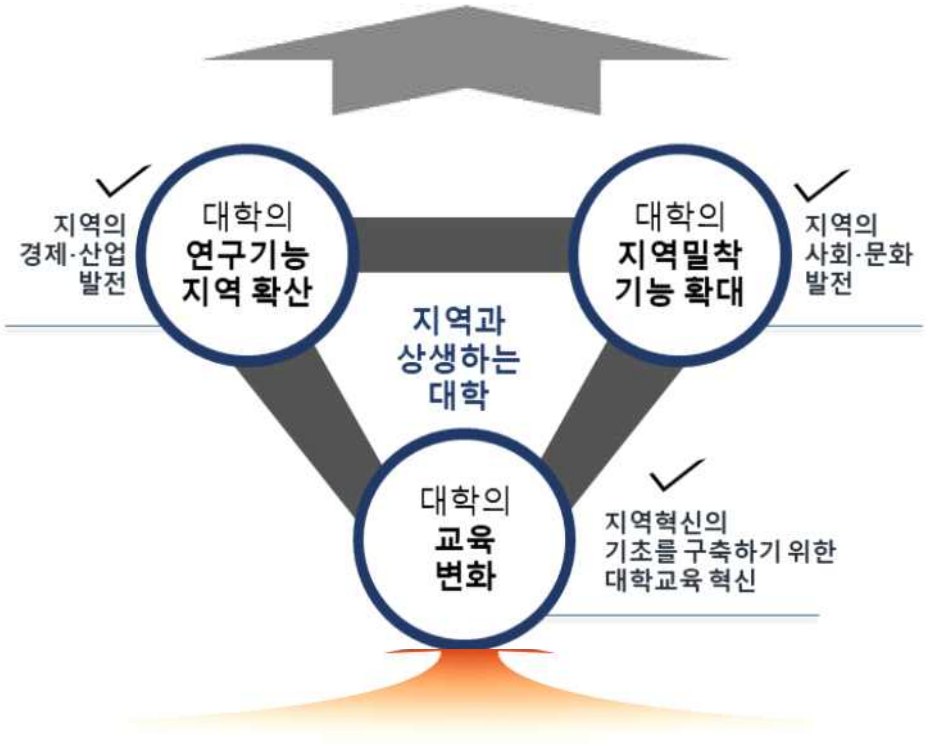
비전

대학의 혁신, 지역의 혁신으로!

목표

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

추진 방향



지역혁신 플랫폼

- 지자체－대학－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
- 지역의 인재양성정책을 총괄하는 거점기구로 확장

핵심 가치

개방과 참여 | 공유와 연계 | 성과와 지속가능성

1 지역혁신플랫폼의 기능 강화 및 구축 확산

○ **(기능 강화)** 대학교육혁신을 토대로 **지역혁신플랫폼**이 지역 내 **취업·창업 지원의 구심점**으로 역할 하도록 기능 강화

- **(프로그램·기관 연계)** 타 **취·창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** 및 개별 대학·지자체 등에 산재한 **기관 간 연계**로 취·창업 성과 제고 지원
- **(정보시스템 개선)** 플랫폼별 구축된 **정보통합관리시스템**의 **취·창업 관련 정보·기능 우선 개선**을 통해 지역 내 **인력 미스매치 해소** 등 지원
- **(교육과정 활용 확대)** 융합전공 등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**비전공자·재직자·전직자** 대상 **지역수요 맞춤 교육**(모듈형, 학점당학위제 등) 확대

○ **(구축 확산)** **신규 플랫폼을 2개 추가**하여 '대학교육혁신-취·창업-정주'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체계를 **비수도권에서 단계적 구축 확산**

2 지역혁신의 핵심주체인 지자체 역할 및 지원 강화

○ **(역할 강화)** 지역혁신사업의 **소과제, 자율과제 등 추진과정**에서 **지역기업** 등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**지자체의 참여·권한 강화**

- 지역현안 해결 등 **지자체의 우선순위**에 따른 수요·요청에 의해 **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 상향** 가능

○ **(지원 강화)** 플랫폼 구축 지역은 **지자체가 중·장기 인재양성전략 수립**(초광역권·강소권) 시, **플랫폼**에서 주체 간 연계 등 **지원**

3 지역혁신플랫폼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

○ **(성과 지원)** 교육부-사업위탁기관-플랫폼들 간 **정례협의회, 성과공유대회, 교육, 홍보** 등을 확대하여 **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제고** 지원

- **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** 확대 및 사업신청 시 **규제특례 필요사항 사전 발굴**을 통해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

○ **(성과 관리)** 연차별 **성과핵심지표** 사전 개발·제시, **단계평가** 적용, 성과평가 결과와 **재정배분과의 체계성** 제고 등을 통해 **성과 관리 강화**

Ⅳ. 사업 주요내용

1 2022년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○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, **'지방대학의 혁신'**을 통한 **'지역혁신'** 추진

□ 지원 내용

○ **지자체, 대학** 및 **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**이 (1)**플랫폼을 구축**하여 (2)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**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**, (3)**'지역 내 대학'**들이 **핵심분야**와 연계하여 [a]**교육체계**를 **개편**하고, [b]**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**를 **수행**하는 것을 지원

□ 사업 세부내용

○ **(사업기간)** '22. 5. 1. ~ '23. 3. 31.

※ (전체사업기간) 선정 시부터 5년(3+2)

○ **(사업비)** 국고 2,440억 원(사업관리비 12억 원 포함)

※ 전체 사업비(국비+지방비)의 30%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

○ **(지원 대상 및 규모) 6개 지역혁신플랫폼**(계속지원 4개, 신규지원 2개)

- 계속지원 플랫폼(충북, 울산·경남, 광주·전남, 대전·세종·충남)은 플랫폼 규모(단일형, 복수형)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**차등지원 예정**(1,740억 원 내외)
- 신규지원 플랫폼은 공모를 통해 **유형 구분 없이 2개 플랫폼** 선정·지원 예정(700억 원 이내)

2 지역혁신플랫폼 구축

□ 참여기관

○ 지자체,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

< 플랫폼 참여기관 자격 >

□ 광역자치단체 ※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제외

○ **(단일형)** 1개의 '광역자치단체' 단독

○ **(복수형*)** '도'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'광역시'의 연합 또는 하나의 '도'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'광역시' 간 연합

* 상기 기준으로 복수형 구성이 불가능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, 공통의 핵심분야를 기반(분야연계형)으로 미참여 지역과 연합하여 복수형 신청 가능

□ 대학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20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외 모든 학교 참여 가능

※ 사업 선정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,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

※ 분교는 '분교가 위치한 지역'을 기준으로 하며, 캠퍼스는 '본교가 위치한 지역'을 기준으로 함. 단, 캠퍼스는 '캠퍼스가 위치한 지역'을 기준으로 '그 밖의 지역혁신기관'으로 참여 가능(대학교육혁신에 사업비 지원 불가)

○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(과학기술원, 폴리텍대학 등)도 참여 가능

※ '대학교육혁신'에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사업비는 자체 부담해야 하며, '그 밖의 지역혁신기관'으로서 '핵심분야별 과제' 수행 및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

< 대학 유형 구분 >

▪ **(중심대학)** 참여대학 중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서, 지자체 관련부서와 함께 핵심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핵심분야 과제 설정·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

※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에서 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가능

▪ **(총괄대학)** 중심대학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~제4호의 학교로서 대학부문을 대표, 대학교육혁신본부 주관 및 전체사업비 관리

※ 단, 플랫폼 조직이 법인일 경우 법인에서 전체사업비 관리

□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

○ 기업, 연구소, 상공회의소, 교육청, 학교, 테크노파크, 창조경제혁신센터, 지구·특구·단지 관리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

※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으로는 소과제 등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, '지역협업위원회'의 사전 승인을 받아, '소과제 협업기관'인 경우에 한해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가능

3 플랫폼 운영 체계

□ 지역혁신 플랫폼 조직

○ 플랫폼 운영조직은 **심의·의결기구**인 **'지역협업위원회'**, **기획·집행기구**인 **전담기관(총괄운영센터,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분야별 팀)**으로 구성

○ **전담기관**은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총괄대학의 소속(부설)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

- '지방대육성법'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지역인재양성체계 지원을 위한 **전담기관**으로 **지정 신청 가능**

< 전담기관 개요 >

- **(목적)** 지역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기구
- **(요건)** ①지방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에 소속(부설)된 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, ②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
- **(근거)** 「지방대육성법」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('21.6.1. 시행)

- 전담기관을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체계에 해당하는 조직을 법인 내에 구성하여야 함

※ 법인 운영 시 새로 설립하거나 기 설립된 법인을 활용(정관변경 등을 통해 본 사업을 법인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)하는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가능(법인 추진 시 교육부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필요)

< 플랫폼 운영 체계(예시) >



※ 위 틀을 참고하되,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조직의 명칭, 구성, 인력 배치, 사무소 위치 등을 다양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※ 플랫폼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인력은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,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플랫폼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운영

[심의 · 의결 기구]

□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· 운영

○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,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계획, 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 **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’**의 **주요 사항**을 **심의·의결**하는 기구

< 지역협업위원회 개요 >

■ **(개념)** 지역협업체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지역의 기구

■ **(구성)** 지방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※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고등교육기관의 장도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음

■ **(근거)** 「지방대육성법」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('21.6.1. 시행)

○ 위원은 **지자체, 총괄대학, 중심대학** 및 **지역혁신기관의 장**으로 **구성**하며, 테크노파크 원장, 창조경제혁신센터장, 지구·특구·단지 관리 기관의 장, 지방중소기업청장, 교육감, 기업CEO, 지역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음

- **위원장**은 **지자체 장**과 **총괄대학의 장**이 **공동**으로 하되,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

○ **지역협업위원회**에서 **심의·의결된 사항**은 **기획·집행기구**인 **‘전담기관’**에서 실행

[기획 · 집행 기구]

□ 전담기관의 구성 · 운영

○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’의 기획·집행을 추진하는 **총괄운영센터, 대학교육혁신본부, 핵심분야별 팀**을 설치

- **직원**은 **대학**이 **지역**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·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·지자체·기업·연구소·학교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의 **‘파견인력’**과 **‘채용 전담인력’**들로 구성

- 법인으로 운영 시 핵심분야별 팀에 **중심대학**으로부터 **파견인력** 구성 필수

□ 총괄운영센터

○ **(역할)**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을 **기획·조정**하며, **조직 운영 전반**을 **총괄·관리**

- **(기획·조정)** ‘**핵심분야 선정** 및 **분야별 역할 분담**’, ‘**대학교육혁신**과 **핵심분야**별 **과제추진 총괄·점검·관리***’ 등

 *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참여기관 간 연계조정, 플랫폼 안팎으로의 성과공유 활성화 등

- **(공유·연계)** 지역 내 인재양성사업 관련 **정보통합관리망**을 **구축**하고, 이를 바탕으로 **사업 간 연계방안** 및 **개선방안 도출**

○ **(센터장)** 전문성·경력 등을 고려하여 **지역협업위원회**에서 **임명**하며, **시·도지역혁신협의회**(「국가균형발전법」 제28조) **위원**으로서 중요사항 논의 및 진행상황 수시 공유

※ 다만,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, 센터장을 위촉 우선순위자로 하여 공석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□ 대학교육혁신본부

○ **(역할)** **총괄대학**이 **주관**하며, 핵심분야를 고려한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·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·관리

- **(대학 간 협의 지원)**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**분석·진단** 및 **대학 간 논의의 장*** 마련 지원

 * 교무위원급 이상 인사 간 협의 및 실무회의 운영 지원 등

- **(교육혁신 관리)** 각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**대학교육혁신추진과정**을 **점검**하고 **성과**를 분석·관리

□ 핵심분야별 팀

○ **(역할)** 핵심분야별로 **지자체 관련 부서**와 **중심대학**이 **주관**하며, 핵심분야 과제 설정·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·관리

- **(협업 지원)** **지역혁신기관 간 협업**이 **활성화**될 수 있도록 **협업 기반 조성·지원**

- **(과제수행 관리)** **과제별 추진과정**을 **점검**, **성과**를 **관리**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별 **애로사항 자문**

4 핵심분야 선정

□ 핵심분야

○ **대학이 역량**을 발휘하여 **지역혁신**에 **기여**할 수 있는 **분야**로서,

- **지역주력산업***, **지역 현안** 등 **다양한 범위**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**'선택과 집중'** 원칙에 따라 **최우선순위** 분야를 **소수** 선정

* **(지역주력산업)** 지역특성에 따른 유망 신산업·기업 육성을 위해 48개 지정 (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디지털·그린 분야 등 중심으로 '20.12월 개편 완료)

- 해당 지역 내 경쟁력이 있는 경제·산업·사회·문화 분야에서 **시너지 창출**이 **가능한 영역**(동종 산업 내 연계가능한 핵심분야 등) 중심으로 신청

○ 지자체별·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·지역혁신성장계획·지역산업진흥계획·초광역권/강소권발전계획 등 **자체 발전계획**들과 **방향성이 부합**하도록 선정

※ (복수형) 핵심분야가 각각의 지자체별 발전계획과 방향성이 부합해야 함

- **중장기**(5년 이상) **성과 목표**를 **구체적**으로 설정할 수 있는 **수준**에서 **선정**하여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유의

< 지역혁신플랫폼 현황 >

지자체	선정연도	핵심분야	
광주·전남	'20년	■ 에너지신산업 ■ 미래형운송기기	
울산·경남		■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■ 스마트제조 ICT ■ 스마트공동체	■ 미래모빌리티 ■ 저탄소그린에너지
충북		■ 제약바이오 ■ 정밀의료·기기	■ 화장품·천연물
대전·세종·충남	'21년	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■ 모빌리티 ICT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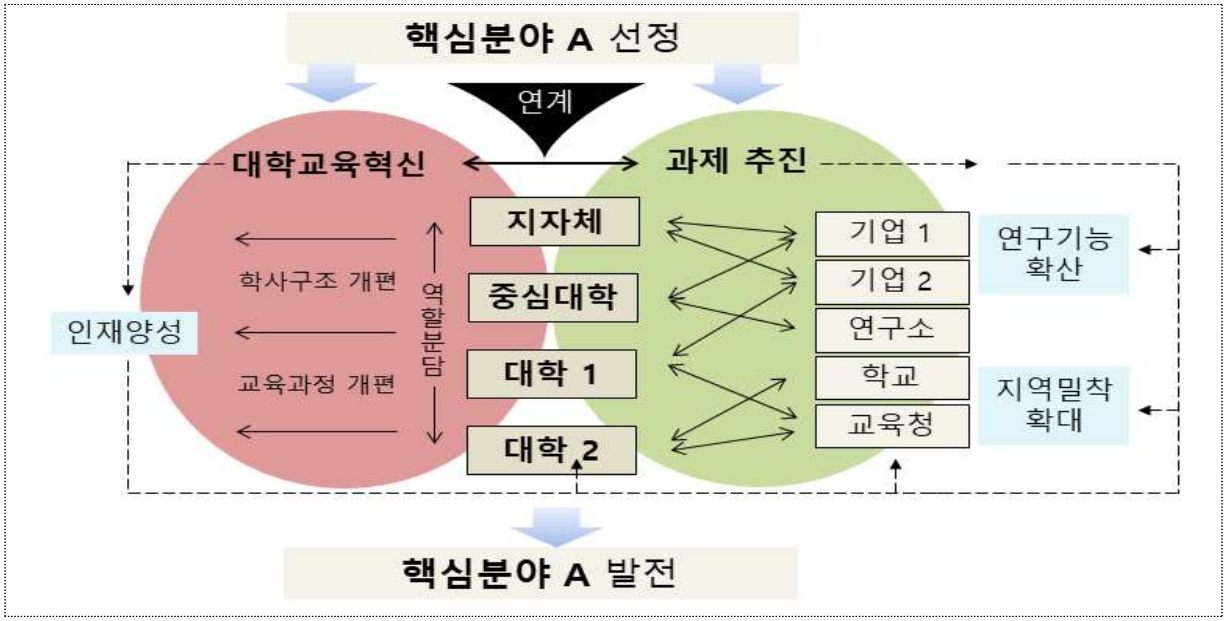
□ 역할분담

○ **각 핵심분야**를 **주관**할 **'지자체 부서'**와 **'중심대학'**을 결정하되, **부서별 소관 업무** 및 **대학별 특성화 전략·해당 핵심분야 관련 역량 등**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서 **자율적**으로 **결정**

○ **지역기업**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**사업**과 **연계**되도록 **지역기업-대학** 간 연결고리로서 **지자체**의 **역할 필요**

5 핵심분야별 혁신 추진

○ **총괄운영센터**와 **핵심분야별 팀**은 각각의 **핵심분야 내**에서 '①**대학교육혁신**'과 '②**분야별 과제**'가 **연계**되어 **추진**될 수 있도록 **지속 관리**



①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'대학교육혁신' 추진

□ 대학교육혁신 내용

○ **(대학 간 역할분담) 대학 간 논의**를 거쳐 **핵심분야별 역할분담 체계**에 **부응**하는 '**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**'

- **대학교육혁신**에 **참여**하는 **대학**들의 **교육체계**(학과·정원 분포, 교육과정) 등을 **분석**하고, **핵심분야와의 연계성**(인력수급 불일치 등) **진단**
- **분석·진단 결과**를 **바탕**으로 **대학별**로 **교육혁신**을 **추진**할 **핵심분야**를 **결정**하되, 대학의 발전계획·특성화전략 등과 부합해야 함

○ **(교육체계 개편)** 해당 핵심분야 관련 **대학들**과 **지역혁신기관** 간 **논의**를 거쳐 **대학별 교육체계 개편방안 구체화**

- 동일 핵심분야 내에서도 **대학별로 중점적으로 육성**할 **세부분야**를 **정하고**, 해당 분야 육성을 위한 **학사구조·교육과정 개편** 등 **추진**

< 대학교육혁신 예시 >

대학 간 역할분담	학사구조 개편	교육과정 개편	교육과정 활용
▸대학 간 교원·교육과정 연계·교류 및 상호인정 ▸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설계	▸단과대학/학과(부)/전공 편제 개편 ▸학사구조 구분에 따른 교원/직원/학생 정원 조정 ▸정원운용의 유연성 제고	▸학사과정/대학원 과정 교과목 편제 개편 ▸전공과정/교양기초과정 교과목 개편 ▸현장밀착형 교수학습방법	▸비전공학생, 재직자, 전직자 대상 비학위 과정 제공 ▸핵심분야 관련 기초소양·교양 교과목 개발·보급

○ **(특화지역 연계)** 대학교육혁신방안 수립 시 지역별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**규제사항**을 **사전**에 **발굴**하여 지역에서 **충분한 논의** 필요

※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시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요구되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특화지역 지정 신청 준비 필요

□ 대학교육혁신 참여

○ **(필수 참여대학)*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~제4호의 학교 중 2022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서 **'핵심분야별 과제'에 참여**하는 대학

※ 대학교육혁신 수행단위는 각 대학의 본부

- **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**은 **자율적**으로 **참여 가능***하나 **중심대학**을 맡을 경우 대학교육혁신에 **필수 참여**

* 단, 대학교육혁신 소요 비용은 자체 부담하며, 사업 신청 전에 교육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

○ **(참여방법) 총괄대학**과의 **'협약'**을 통해 **교육체계 개편계획 이행 의무**를 명확히 하여 **참여**

②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'핵심분야별 과제' 추진

□ 과제 설정

○ **(대과제 설정) 지자체가 총괄**하여 **핵심분야**의 **혁신**을 **달성**하기 위한 **중장기 성과목표**인 **'대과제'**를 **설정**

- **핵심분야** 혁신을 위해 필요한 **모든 부분***(범위 또는 단계)이 **포함**될 수 있도록 **대과제**를 **다각적**으로 **구성**

* (단계 예시) 연구개발 단계, 사업화(기획·기술 개발·생산·판매) 단계 등

○ **(소과제 구성·운영) 대과제 추진**을 위해 **필요한** 세부 **'소과제'**들은 **지자체와 협의**를 거쳐 **중심대학**이 **구성·운영 총괄**

- **대학**이 보유한 **인적·물적 자원** 등을 **활용**하여 **수행**할 수 있는 **다양한 과제**를 **발굴**하며, 관련 **중앙부처·지자체 사업**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들과의 **연계성**을 **고려**하여 설정

- 소과제는 **핵심분야** 및 **대과제**와 **체계성**을 갖추어야 하며, 과제구성 및 운영 단계에서 **지자체**와 **기업**의 **수요** 등을 적극 반영

※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소과제 체계성이 없는 경우 조정 가능

- **소과제**는 하나의 **'대학'**이 **단독으로 수행**하는 **'단독과제'**와 **다른 기관**과 **공동**으로 **수행**하는 **'협업과제'**로 구분하며, 각 과제에서 **역량**을 **발휘**할 수 있는 **적합한 기관**이 **과제별 참여기관**으로 **참여**

○ **(지역혁신 자율과제)** 핵심분야 외 **지역현안 해결, 지역사회 활성화**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과제 편성 가능

※ **(예시)**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최우선 지원, 기초지자체-전문대 간 연계하여 대학 부지를 활용한 복지시설 운영,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등

- 단, 자율과제는 지자체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 **협업과제만 가능**하고, **5% 이내로** 편성

※ 성과평가·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부터 비율 축소 가능

□ 과제 참여

○ **(단독과제 참여조건) '대학교육혁신'에 참여**하는 **대학**(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)만 가능

○ **(협업과제 참여조건) 다양한 지역혁신기관**이 **참여 가능**하나, **'대학교육혁신'**에 **참여**하는 **대학**이 하나 이상 **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함

구분	단독과제	협업과제
참여 기관	주관기관	주관기관 + 협업기관1 + 협업기관2 + …
참여 조건	▸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만 참여 가능	▸대학, 기업, 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, 협업기관으로 참여 가능 ▸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 하나 이상 필수 참여

- **과제의 성격**에 따라 **대학 외 기관**이 **주관기관***이 될 수 있음

* (주관기관)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한 개 기관만 가능
(협업기관)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 가능

○ **(참여방법) 참여기관**은 **중심대학**과의 **'협약'**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하여 **참여**

- **협업과제**의 경우 **주관기관**과 **협업기관**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

- **지역 외**에 **소재한** 기관*도 **'협업기관'**으로 참여 가능

*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으로는 소과제 등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'지역협업위원회'의 사전 승인을 받아, '소과제 협업기관'인 경우에 한해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가능

6 정보의 공유 및 사업 간 연계

□ 기본방향

□ **지역 내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보 통합 관리망 구축**	
	•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대학 관련 사업 정보 취합, 공유
	•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보 취합, 공유
	• 대학(본부, 대학원, 부속기관 등)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정보 취합, 공유
□ **현황 관리 및 분석**	
	• 정보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작업 진행
	• 지역(플랫폼)의 애로사항 또는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
□ **정보 활용**	
	• 학생, 기업 등 지역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
	• 사업 개선방안, 연계방안 도출 및 제안
□ **상향식 지역인재양성체계 거버넌스 구축**	
	• 지역(플랫폼)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·조정
	•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기획 및 프로세스 개선

※ 정보의 공유·관리 및 사업 간 연계에 있어 취·창업 지원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집중 지원 추진

□ 정보의 공유 · 관리

○ **(정보 취합·공유) 지역혁신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**(인력, 예산, 물적자원 등) 및 **중앙부처·지자체**에서 추진하는 **대학 관련 사업**의 **지원내용·대상·규모** 등의 **정보**를 **플랫폼**을 통해 **공유·취합**

○ **(정보 관리·분석) 정보**를 **'데이터베이스화'**하여 **지속적**으로 **관리**하는 **체계**를 **구축**하고, **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**을 위한 **분석 작업 진행**

□ 사업 간 연계

○ **(연계사업 발굴)** 대학교육혁신 방안 마련 및 핵심분야별 과제 설정 시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

○ **(연계방안 모색) 연계 추진이 가능한 경우**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**구체적인 '사업 간 연계방안'**을 마련하여 추진

○ **(연계추진 관리) 사업 간 연계 추진과정** 및 **성과**를 **관리**하고,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**건의사항** 및 **애로사항 발굴·개선**

※ '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'에 제안 → 범부처 논의·지원

□ 기관 간 연계

○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대학·지자체 등에 산재해 있는 **취·창업 지원 기관**의 **지원인력·시설·기자재 등**을 **연계**하여 성과 제고

< 사업 간 연계 유형별 예시 >

1 인적·물적 자원 공동 활용

○ **(연계대상)** 기업·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**지구·단지·특구 조성 사업**, **시설·장비 구축 지원** 사업, **비예산 정책 사업** 등

○ **(연계방안) 지구·단지·특구 내 기관·시설**과 **대학의 인적·물적 자원**을 **연계**하여 지구·단지·특구의 기능 활성화 또는 **대학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**을 **타 사업에 개방**하여 **공동 활용**

·국토부 '**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**'		
(현행)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혁신 추진	⇒	**(연계)** 대학 및 대학원 캠퍼스의 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(~'22.上 법령개정),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·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지원
·국토부 **'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'**		
(현행) 비수도권 **5개 광역시 중심**에 **산업, 문화, 주거를 복합 지원**하는 **혁신공간 조성** 추진 - 도시첨단산업단지, 규제자유특구 등 범부처 사업 지구를 융합지정하고 창업이전기업 지원	⇒	**(연계)** 지역혁신플랫폼 조직이 특구 내에 위치, **특구 내 '교육' 분야 연계·협업 담당** - 특구 내 대학 캠퍼스 또는 강의실·연구실 구축,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·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지원
·교육부·국토부·중기부 **'캠퍼스 혁신파크'**		
(개요) 산학연협력단지 등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, 지식산업·정보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	⇒	**(연계)** 대학 내 기업·연구소와 연계하여, 국토부의 기업입주시설·복지·편의·주거시설과 연계

2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

○ **(연계대상) 대학이 수행 중**인 사업, 대학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**새로운 수행주체로서 참여**할 수 있는 사업 등

○ **(연계방안) 대학을 활용**하여 기존 사업의 **전·후 단계 지원** 또는 **지원범위 확대**

·고용노동부 **'K-디지털 트레이닝'**		
(개요) 디지털 기반 기술, 응용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'**미래형 핵심 실무인재**' 양성	⇒	**(연계)**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, 디지털·신기술 특화과정을 제공·지원

3 사업 간 상호조정

○ **(연계대상) 사업 목적** 및 **추진체계가 유사**한 사업 등

○ **(연계방안) 사업내용 조정** 및 **사업 간 관계 재설정**을 통한 **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**

·교육부 **'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'**		
(현행) 지방대학이 지자체, 공공기관, 산업계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설·운영	⇒	**(연계)** '21년부터 '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'의 협력체계를 지역혁신플랫폼 체계로 점차 편입하여 운영 ※ 소과제 또는 지역혁신자율과제로 운영

Ⅴ. 2022년도 평가계획

1 신규 선정평가

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

○ **(신청대상)**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구성한 **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**

○ **(신청방법)** (예비)**지역협업위원회**를 **구성**하는 **지역혁신기관의 장**들과 (예비)**센터장**이 '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서'를 함께 **제출**

※ 중복신청 불가(하나의 광역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신청서만 제출 가능)

※ 예비접수 마감일('22.2.28.)까지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

□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○ **(예산신청)** 국고 기준 **최대 지원 금액**(복수형 400억 원, 단일형 300억 원) 이내로 신청하며,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**사업비 조정 가능**

- 전체사업비(국고+지방비) **30% 이상**의 **지자체 대응투자 확보**(현물 미포함)

※ **동 사업**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**타당성 조사** 및 **투자심사** 대상이므로, 신규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준비·대응 필요

○ **(작성내용)** 사업추진방향, 사업추진체계, 사업추진내용, 재정투자계획,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되, 지역혁신플랫폼의 **5개년 운영계획**을 포함하여 작성

-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(예비)**지역협업위원회**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출

○ **(유의사항)**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지원하는 **타 재정지원사업**과 **동일한 내용**으로 **중복 투자** 및 **집행**이 **발생하지 않도록** 계획을 수립하고,

- 사업비가 선정 후 확정되므로, 과제 구성 시 **우선순위**를 **고려**하여 **조정 가능성** 확보

□ 평가 절차

○ **(선정규모)** 지역혁신플랫폼 총 2개(유형 구분 없이 선발)

○ **(선정방법)** 평가단의 **서면·발표평가** 및 **현장방문**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

- **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**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
- **(발표평가)** 지자체·대학 등 **참여기관**의 **의지, 구체적 사업계획** 등을 사업추진 관련자 **발표** 및 **질의응답** 등을 통해 평가
- **(현장방문) 현장을 방문**하여 **지자체·대학 등 참여기관의 적극성, 사업 추진 여건** 등을 **보충적으로 확인**

※ 일정(안) : 기본계획 수립·공고('22.1.28.) → 사업신청의향서 예비접수(~'22.2.28.) → 사업계획서 접수(~'22.3.28.) → 선정평가 및 사업협약체결(~'22.4.)

□ 평가 중점 사항

○ 지자체가 주도하여 **지역별 특성**과 **강점**을 살리되, **지역혁신모델**을 **반드시 제시**

-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체계, 운영방식은 **자율적으로 구성 가능**하나, **복수형**인 경우 **협업체계 및 공동과제 반영** 필수

□ 평가단 구성 · 운영

○ **지역·산업계 인사, 고등교육 전문가** 등 **관련 분야별로 대표성**이 갖춰지도록 **선정평가단 구성**

※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며,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 최종 확정

○ 선정평가단 구성 시 **소속 기관 소재지** 등 상피조건을 고려하여 **평가 공정성** 확보

□ 부정·비리 대학 수혜 제한

○ 대학의 **부정·비리 사안**에 대해서는 [붙임 2]의 **수혜제한** 규정 적용

- 사업개시 전년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

※ 입시·학사 비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

□ 평가항목

영 역		항 목	배점
1. 사업 추진방향 (70)		1-1.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	30
		1-2.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	40
2. 사업 추진체계 (80)		2-1. 조직구성계획의 적정성	35
		2-2.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	35
		2-3. 센터장의 역량	10
3. 사업 추진 내용 (250)	(가) 대학교육 혁신 (80)	3-1. 대학교육혁신 지원·관리 계획의 적정성	20
		3-2. 대학교육혁신 추진 계획의 적정성	60
	(나) 핵심분야별 과제 (90)	3-3. 핵심분야별 과제 지원·관리 계획의 적정성	20
		3-4.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	60
		3-5. 지역혁신 자율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	10
	(다) 연계계획 (80)	3-6. 핵심분야 내 연계 계획의 적정성	20
		3-7. 사업 간 연계 계획의 적정성	60
4. 재정투자 계획 (50)		4-1.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	30
		4-2. 예산편성·집행계획의 적정성	20
5. 성과관리 계획 (50)		5-1.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	20
		5-2.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	20
		5-3. 성과확산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	10
계			500

< 신규선정 평가주안점 >

1. 사업추진방향

1-1.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

- ▸ 지역의 현황분석(위기현황, 가용자원)의 정밀성
- ▸ 대학과 지역 간 연계현황 분석의 정밀성
- ▸ 분석 결과와 지역의 목표 간 논리적 정합성

1-2.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

- ▸ 지자체·대학 중장기발전계획, 지역혁신성장계획 등과의 정합성
- ▸ 우선순위(필요성·시급성 등),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
- ▸ 의견수렴 절차(공청회 등), 데이터 분석 등 지역수요 반영을 위한 과정의 적정성

2. 사업추진체계

2-1. 조직구성계획의 적정성

- ▸ 하부조직 구성, 조직규모 등 조직체계의 적정성
- ▸ 총괄대학, 중심대학, 지자체 부서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(역량, 추진의지 등 포함)

2-2.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

- ▸ 지역협업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(회의 규칙,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등)
- ▸ 조직인력 확보(파견인력, 전담인력 채용) 및 운영(업무분장 등)의 적정성
- ▸ 사무소 공간 확보의 적정성

2-3. 센터장의 역량

- ▸ 센터장의 전문성, 리더십, 의지, 소통능력 등

3. 사업추진내용

3-1. 대학교육혁신 지원·관리 계획의 적정성

- ▸ 대학교육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(의견수렴, 합의과정 등)의 적정성
- ▸ 대학별 대학교육혁신방안 추진현황 점검·관리 계획의 적정성

3-2. 대학별 교육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

- ▸ 대학별 교육체계 분석·진단 결과와 대학교육혁신 방향의 정합성
- ▸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개편방안의 구체성

3-3. 핵심분야별 과제 지원·관리 계획의 적정성

- ▸ 핵심분야별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기반 조성 계획의 적정성
- ▸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현황 점검·관리 계획의 적정성

3-4.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

► 핵심분야 내 대과제(성과목표) 설정의 적정성

► 소과제 구성의 적정성

► 소과제 수행단위 및 협업기관 구성의 적정성(역량, 추진의지 등 포함)

3-5. 지역혁신 자율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

► 자율과제 구성의 적정성

3-6. 핵심분야 내 연계 계획의 적정성

► 핵심분야 내 '대학교육 혁신'과 '분야별 과제 추진' 연계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

3-7. 사업 간 연계 계획의 적정성

► 지역혁신기관 간 정보 공유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

►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관리체계(데이터베이스) 구축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

► 사업 간 연계 추진 및 관리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

4. 재정투자계획

4-1.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

► 총괄운영센터, 대학교육혁신본부, 핵심분야별 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

► 배분기준 설정 등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

4-2. 예산편성·집행계획의 적정성

► 예산 편성·집행기준 설정 등 사업비관리계획의 적정성

► 세부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

5. 성과관리계획

5-1.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

► 조례·규칙·학칙 등에 참여주체들의 운영규정 반영계획의 적정성

5-2.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

►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적정성

5-3. 성과확산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

►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·환류방안의 체계성

2 기존 플랫폼 대상 성과평가

□ 개요

○ **(추진방향) '21년도 추진성과** 및 **'22년의 추진계획**을 평가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성과목표 달성 유도

○ **(평가대상)** 충북, 울산·경남, 광주·전남, 대전·세종·충남 지역혁신플랫폼

○ **(평가방법) 평가단**(단일 패널)을 구성하여 **서면 및 발표평가** 실시

- **(점검내용) '21년 추진실적, 성과지표 달성여부** 및 **'22년 사업 추진계획**

※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성과평가계획에서 별도 안내

- **(점검자료)** 플랫폼이 제출한 **연차보고서** 및 **'22년도 사업계획서**

○ **(평가시기) '21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시**

※ 일정(안) : 성과평가계획 안내('22.3.) → 사업 종료('22.4.) → 성과평가 실시('22.5.~6.)

□ 결과 활용

○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단일형 300억 원, 복수형 480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**사업비 조정규모**를 결정하여 사업비 **차등지급** 예정

성과평가 결과	A등급	B등급	C등급
등급 산출방식 (표준편차 적용)	평균 +1σ 초과	평균 ± 1σ 이내	평균 –1σ 미만
사관위 조정 가능 규모	0% ~ +10%	-5% ~ +5%	-10% ~ 0%

※ 위 등급별 조정 가능 규모 내에서,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세부조정액 결정

○ 'C등급' 판정 시, '22년도 계획 보완 및 추진에 대한 **집중 컨설팅** 실시

3 2020년 선정 플랫폼 대상 단계평가

□ 개요

○ **(추진방향) 사업 2단계**에 접어드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**그간의 실적**과 **향후 추진계획**을 평가하여 **성과 고도화** 및 **확산 지원**

○ **(평가대상)** 충북, 울산·경남, 광주·전남 지역혁신플랫폼

○ **(평가방법) 평가단**(단일 패널)을 구성하여 **서면 및 발표평가** 실시

- **(점검내용)** 1단계 사업('20~'22) **추진실적** 및 2단계 사업('23~'24) **추진계획**을 **평가**

※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내용은 단계평가계획에서 별도 안내 예정

- **(점검자료)** 플랫폼이 제출한 **단계평가보고서**

○ **(평가시기) '22년 사업 종료 전 실시**

※ 일정(안) : 단계평가계획 안내('22.12.) → 단계평가 실시('23.2.) → 1단계 사업종료('23.3.)

□ 결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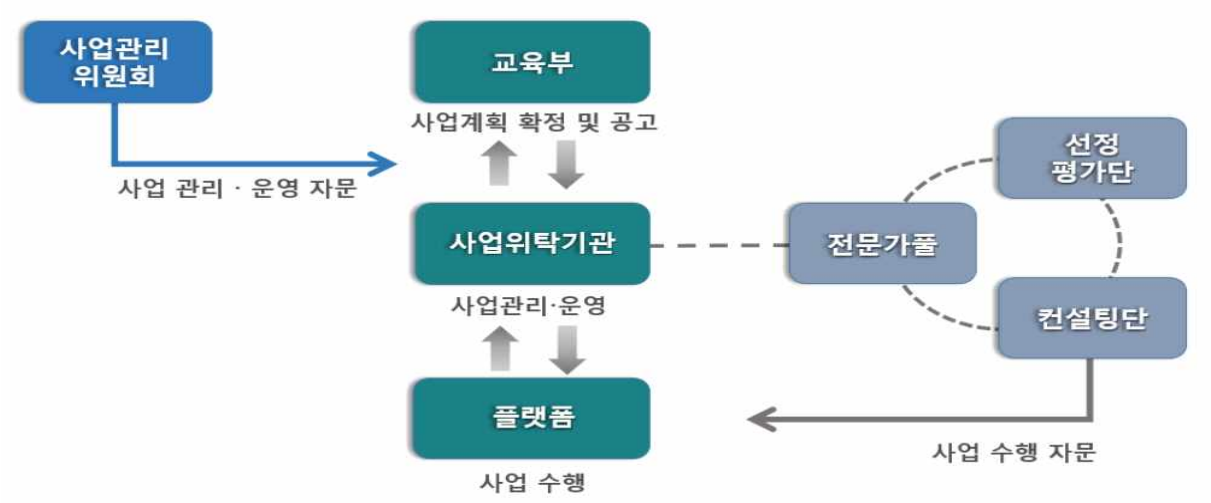
○ 단계평가는 통과/미통과(P/F제도)로 운영하며, 단계평가 결과 **60점 미만**인 경우 '**미통과**'로 **판정**하여 1단계 사업종료 후 **지원 중단**

○ 단계평가를 받은 플랫폼은 **3차년도 성과평가**를 **면제**하고, 4차년도 사업비 **고정지급** 예정

Ⅵ. 사업 관리

1 운영 관리

□ 운영체계도



□ 운영주체

○ **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** 확정·공고, 성과관리 등 **사업 총괄**

○ **(사업위탁기관) 한국연구재단**에서 **사업 관리·운영**

- 사업관리위원회 운영
-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선정평가·단계평가 시행, 성과평가 실시·분석
- 전문가풀·평가단·컨설팅단 구성·운영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

○ **(사업관리위원회) 사업 관리·운영**에 관한 **자문, 지원 대상** 및 **지원금 확정,**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**주요사항 심의**

○ **(전문가풀)** 학계, 산업계, 연구기관 등 **관련분야 전문가**로 풀을 구성하되, **다양한 기관의 추천인사 포함**

- **선정평가**와 **컨설팅 간 연속성** 확보를 위해 **전문가 풀 내**에서 **선정평가단**과 **컨설팅단**을 **연계**하여 **구성·운영**

□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

○ **(협업위원회 협약) 지자체, 총괄대학, 중심대학, 지역혁신기관의 장들은** 「협업위원회 협약」을 체결하여 (예비)**'지역협업위원회' 구성**

- 지역협업위원회의 **목적, 구성원 간 협력과 역할** 등 포함

※ 선정 이후, 전담기관이 지정되면 '지방대육성법'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 구성

○ **(사업협약)** 선정된 **플랫폼**은 **사업위탁기관**과 **「지자체-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협약」** 체결

- 총괄운영센터 장, 지역협업위원회의 장*이 연명 날인

* 공동위원장인 경우 위원장 모두의 연명 날인 필요

- **사업계획**의 **주요내용**, 달성해야 하는 **주요 성과**, 지자체·중심대학·센터의 **주요 의무사항, 불이행 시 조치사항, 사업비 교부·관리** 등 포함

○ **(참여협약)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**은 **총괄대학의 장**과, **핵심분야별 과제 참여기관**은 **중심대학의 장**과 **「참여협약」**을 체결해야하며 **주요 의무사항, 불이행시 조치사항** 등 포함

2 예산 관리

□ 사업비 교부

○ **전체사업비**는 **국고 70%**와 **지방비*** **30%**로 **구성**

* 선정결과 발표 이후 지방비 편성 시 **'23년 2월까지 편성** 및 **사업기간 내 집행 완료**해야 하며, **지자체 장**의 추경예산 또는 본예산 **확보 확약서 첨부**

○ **국고**는 **사업위탁기관**을 통해 **총괄대학**(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)에 **교부**하며, **지방비**의 경우 **지방자치단체**가 **직접 총괄대학**(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)에 **교부**

- 단, 법인 운영 시 전체사업비는 법인으로 교부되며,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별도 안내

□ 부정·비리 대학 수혜 제한

○ 대학의 **부정·비리 사안**에 대해 [붙임 2]에 따라 **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 및 국고를 삭감**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**전체사업비를 조정**할 수 있음

□ 사업비 관리

○ **전체사업비**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**'총괄대학'**이 **총괄관리**

-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**별도 관리**할 수 있도록 **"00지역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총괄계정**(계좌)**"**을 **설치**하여 **관리**
-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**별도 전담조직**이나 **관리부서 지정**

○ 전체사업비 중 ①**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**은 **'총괄대학'**이 총괄 계정과 분리된 **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(계좌)***을 설치하여 관리

* (예시) "00지역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교육혁신 계정"

○ 전체사업비 중 ②**핵심분야별 팀 예산**은 각 **'중심대학'**에 **재교부**하고, 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**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**에서 **별도 관리**할 수 있도록 **별도 계정**(계좌)*을 **설치**하여 **직접 관리**

* (예시) "00지역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△△핵심분야 계정"

-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**동시에** 담당하는 경우에는 **핵심분야별로 별도 계정**(계좌)을 설치하여 관리
-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**별도 전담조직**이나 **관리부서 지정**

□ 사업비 집행

○ **'사업**을 **수행**하는 **기관'**이 **사업비 지출**에 대한 **의사결정**(=원인행위)을 하면, **'사업비**를 **관리하는 기관'**이 **지출행위**를 함

※ (예시1) 00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학사구조개편 시, 수행기관인 00대학이 대학교육혁신 예산을 관리하는 '총괄대학'에 해당 비용 청구

※ (예시2) △△연구소(주관기관)-00대학(협업기관) 공동과제 추진 시, 수행기관인 △△연구소가 해당 핵심분야 예산을 관리하는 '중심대학'에 비용 청구

○ **사업비**는 **‘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’**([붙임3])에 따라 **집행**

○ **사업 추진 중** ‘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’, ‘횡령’ 등 **부정·비리**가 확인된 경우 **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** 및 **사업비 환수** 등 가능

- 부정·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**발생한 재원**은 **사업관리위원회 심의**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
- 사업기간 중 귀책사유에 따른 **지원금 삭감 등**이 있는 경우, 당초 **협약**한 **사업계획 이행**에 소요되는 **사업비**는 **자체 부담**
- **법령 위반*, 입시비리 등** 사업과 **직접적 관련**이 **없는 부정·비리 사안**도 일정 수준 수혜제한

*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

※ 수혜제한 수위는 「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·관리 매뉴얼」의 기준을 적용(준용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안의 정도, 내용,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·결정

□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

○ 사업기간 종료 후 **전체사업비 관리주체**는 **사업비 정산*** 및 **결과보고 의무**를 지님

* 별도계정을 관리하는 대학은 전체사업비 관리주체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

- **(사업비 정산) 사업위탁기관**에 **사업비 집행잔액**과 **발생이자 반납**
- **(결과보고)**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**자체평가 결과**를 **첨부한 결과보고서**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 **제출**

○ 사업비는 **2022년도 사업종료일인 ’23.3월 말까지 집행 완료**하되, 사업비 **집행지침**으로 **정하는 범위 내**에서 사업위탁기관의 **사전 승인**을 받아 **이월 가능**

※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

○ **회계법인**에 의한 **사업비 집행 점검** 실시

3 성과 관리

① 컨설팅 지원

□ 컨설팅단 구성

○ **지역·산업계 인사, 고등교육 전문가** 등 **관련 분야별로 대표성**이 갖춰지도록 **평가단 구성**

※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위촉하며, 평가단과 컨설팅단 연계

○ **컨설팅 매뉴얼 제작, 컨설팅단 대상 교육 등**을 통해 컨설팅단의 **전문성**과 **사업이해도** 제고

□ 컨설팅 운영

○ **사업계획 단계·사업추진 단계** 등 사업의 **전 단계**를 **지원·관리**

- **(계획수립 컨설팅) 사업을 준비 중**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안 **작성 관련 행정컨설팅** 및 **1:1 사전질의·응답**을 실시하며, **공유**가 **필요**하다고 인정되는 컨설팅 내용은 **공개**

※ 교육부와 사업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

- **(보완 컨설팅) 최종 선정**된 **플랫폼**의 **사업계획** 타당성과 실현가능성,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재정투자계획 등을 **전반적**으로 검토, **시행 전 재점검**하여 **수정·보완사항을 자문·권고**

- **(맞춤형 컨설팅)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** 등에 대해 **정기적** 및 **플랫폼별 수요가 있을 시** 진행

○ 컨설팅단의 **수정·보완 권고 사항**을 **반영**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**컨설팅 결과** 및 **반영여부**를 **성과평가**에 포함

② 성과 창출 지원

□ 성과평가

○ **연도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**를 시행하여 협약사항 이행여부, 추진상황 및 성과 달성 여부,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

- 평가 결과와 사업비를 연계하여 사업비 **차등 지급**
- 사업 추진이 **미흡**한 경우 **경고, 개선권고 등**을 실시

□ 중점 관리 사항

○ **(1차년도)** 지역혁신플랫폼의 **혁신 추진**을 위한 **기반 구축 중심**

※ 정보 통합 관리망 구축, 협업 지원을 위한 제도화 실적 등

○ **(2차년도)** 지역혁신플랫폼의 **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협업 노력 중심**

- **기 구축한 기반**을 **바탕**으로 지역혁신기관 간 **협업**을 통해 **본격적으로 인재를 양성**하고 **활용하는 방안** 추진 실적 점검

※ 양성한 인재의 취·창업 연계를 위한 협업 노력 등

○ **(3차년도)** 대학교육혁신 등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**취업·창업 지원의 구심점**으로 역할 하는지를 중점 점검

□ 성과지표 수립 · 관리

○ **(수립목적)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정도**를 측정할 수 있는 **성과지표**를 **수립**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**성과관리 강화**

○ **(핵심지표) 사업의 핵심가치**(개방과 참여, 공유와 연계, 성과와 지속가능성)를 고려한 **공통 성과지표**

○ **(자율지표) 플랫폼**별 사업계획에 따라 **플랫폼**에서 **자율적으로** 설정하여 중점 관리(5개 내외)

※ 현재 값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

< **성과지표**(안) >

구 분	지 표
핵심지표	▸(1차년도)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공유·관리체계 구축 (2차년도 이후)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공유·관리체계 활용 실적 ▸기관 간 인력 교류 실적 ▸(1차년도)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지원을 위한 제도화 실적 (2차년도 이후)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실적* * 지역인재양성-취·창업-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노력 위주 ▸사업 간 연계 추진 실적 ▸대학교육혁신본부의 제안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실적* *개편유형(대학 간 역할분담, 학사구조 개편, 교육과정 개편)별 가중치 부여
자율지표	▸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설정

※ 단계평가지표 및 4, 5차년도 핵심지표는 가시적인 플랫폼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거쳐 별도 안내 예정

3 성과 공유 및 홍보

○ (성과공유) 교육부-사업위탁기관-플랫폼들 간 **정례협의회**, **성과공유대회**, **전담직원 교육** 등을 통해 **우수사례 확산** 및 **성과 제고** 지원

○ (홍보방안) 대학-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이 **우수한 지역**을 **선정**하여 **수상**하고, **관련 홍보**를 **확대**하여 **사업**의 **성과 확산**

Ⅶ. 향후 추진 일정(안)

※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사업 신청 예비접수: ~'22.2.28.(월)**

□ **사업 신청 플랫폼별 사업계획서 접수: ~'22.3.28.(월)**

□ **2차년도 성과평가 계획 안내: ~'22.3.**

□ **선정평가 실시 및 선정결과 확정 : ~'22.4.**

□ **2차년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플랫폼별 지원 금액 확정 : ~'22.6.**

□ **2020년 선정 플랫폼 단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: ~'23.3.**

붙임 1 **2021년 대비 2022년 중점 추진 및 주요 변경사항**

□ 중점 추진방향

구분	중점 추진방향
플랫폼 기능 강화 및 구축 확산	· **(기능 강화)** 대학교육혁신을 토대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업·창업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 하도록 기능 강화 - **(프로그램·기관 연계)** 타 취·창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및 개별 대학·지자체 등에 산재한 기관 간 연계로 취·창업 성과 제고 지원 - **(정보시스템 개선)**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·창업 관련 정보·기능 우선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 지원 - **(교육과정 활용 확대)** 융합전공 등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비전공자·재직자·전직자 대상 지역수요 맞춤 교육(모듈형, 학점당학위제 등) 확대 · **(구축 확산)** '대학교육혁신-취·창업-정주'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체계를 비수도권에서 단계적 구축 확산 - 신규 플랫폼 2개를 유형 구분 없이 신규 선정, 선정 결과에 따라 복수형은 400억 원, 단일형은 300억 원 지원
지자체 역할 및 지원 강화	· **(역할 강화)**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, 자율과제 등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자체의 참여·권한 강화 - 지역현안 해결 등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요·요청에 의해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 상향 가능 · **(지원 강화)** 플랫폼 구축 지역은 지자체가 중·장기 인재양성전략 수립(초광역권·강소권) 시,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 지원
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	· **(성과 지원)** 교육부-사업위탁기관-플랫폼들 간 정례협의회, 성과공유대회, 전담인력 교육, 홍보 등을 확대하여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제고 지원 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확대 및 사업신청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 사전 발굴을 통해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 · **(성과 관리)** 연차별 성과핵심지표 사전 개발·제시, 단계평가 적용,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 제고 등을 통해 성과 관리 강화

□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1년 기본계획	2022년 기본계획
신규 선정	· 복수형 신규 플랫폼 1개 · 복수형 전환 플랫폼 1개	· **신규 플랫폼 2개**(유형 구분 없음)
사업비 배분방식	· (기존 플랫폼)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(1,080억 원) ※ 단일형: (A) 350억 원(B) 300억 원(C) 250억 원 복수형: (A) 530억 원(B) 480억 원(C) 430억 원 ·(신규 복수형 플랫폼) 480억 원 지급 ·(전환형 인센티브) 150억 원 지급	· **(기존 플랫폼) 성과평가 결과**에 따라 **차등 지급**(1,740억 원) ※ 성과평가 결과 점수분포를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하고, 사업비 차등 배분 예정(최대 +-10%) · **(신규 단일형 플랫폼) 300억 원** 지급 · **(신규 복수형 플랫폼) 400억 원** 지급
단계평가	<신설>	· '20년 선정 플랫폼 대상 **단계평가 '23년 실시 예고** · 단계평가 결과 **60점 미만인 플랫폼**은 **지원중단** 가능 · 단계평가 실시 시 3차년도 **성과평가**(연차평가)**는 면제**하고, 사업비 고정액 지급
지역혁신 자율과제	· 핵심분야 외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전체사업비의 **3% 이내** 에서 협업과제로 편성	· 핵심분야 외 **지역혁신 자율과제**를 전체사업비의 **5%까지 편성 가능** - 자율과제는 지자체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 협업과제만 가능 ※ 성과평가·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부터 비율 축소 가능
지역 외 지역혁신기관	·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만 소과제 참여	· 지역협업위원회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해 **지역 외 지역혁신기관**의 **소과제 협업기관**으로 참여 허용

붙임 2 부정·비리 대학 수혜제한

□ 기준 적용

○ 우리 사업은 **부정·비리**(감사처분 및 행정처분, 형사판결) **대학**의 **수혜제한 방법**과 관련하여 **아래의 기준**을 따르며,

○ 부정·비리 정도 판단기준 등 동 기준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**'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·관리 매뉴얼**('21.1월 개정)'에 따름

□ 제한 방법

○ **'플랫폼의 최종 제한수준'**은 **각 중심대학(총괄대학 포함)**의 **제한수준**을 **합산**하여 결정하며,

- **각 중심대학의 제한 수준**은 아래의 **[표]에 제시된 수치**를 **중심대학의 수(N)만큼 나눈 값**으로 함

부정·비리 정도	신규선정	계속지원
중대	총점 **10%**	총 사업비 **40%**
상	총점 **8%**	총 사업비 **30%**
중	총점 **4%**	총 사업비 **10%**
하	총점 **1%**	총 사업비 **5%**

※ (예시) 4개의 중심대학 중 부정비리 '상' 대학 1개교, '중' 대학 1개교인 경우 총점의 8%의 1/4인 2%, 4%의 1/4인 1%를 적용하여 총 3% 제한

○ 합산한 **제한수준의 상한을 신규선정 10%, 계속지원 40%**로 하되,

- **사회적 파장**이 **큰 부정·비리**인 경우 **사업관리위원회 결정**에 따라 **가중 가능**

○ **사업관리위원회 심의**로 부정·비리의 정도에 따른 **수혜제한 수준을 결정**하며, **필요한 경우**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**가중감경 가능**

※ 고려사항: 대학 자체감사를 통한 부정.비리 제한 여부,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등

붙임 3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

※ 구체적 '사업비 항목별 집행 및 관리기준'은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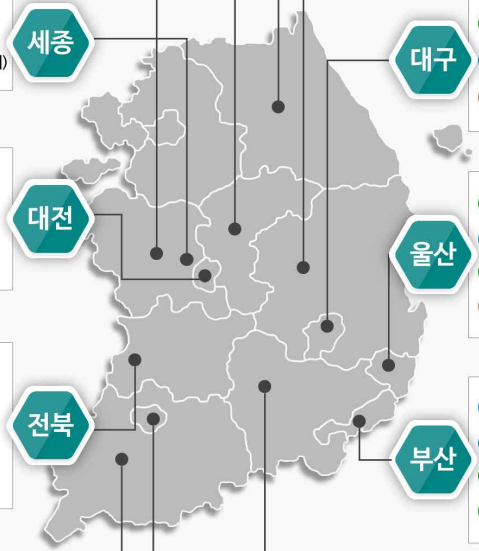
항목		사용용도
직접비	가. 인건비	1)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)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
	나. 장학금	1)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·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)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·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)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
	다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1)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비: 전공·비전공·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, 신규 교재 개발,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)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비: 정책연구비, 강의료, 원고료,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) 국제화 경비: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,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·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
	라. 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	1) 강의실·실험실·실습실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·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)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·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
	마. 실험·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교육·연구·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·실습·시험·분석·계측·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·리스·임차·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
	바. 기업 지원·협력 활동비	1) 산학공동 기술·지식 개발비: 산학 공동 기술·지식 개발 비용 2) 산학협력활동비: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, 재직자 교육, 융·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·지역·협력기관 지원비,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·포럼 추진·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
	사. 성과 활용·확산 지원비	1) 기술이전·사업화 비용: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, 산학공동 기술·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비,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, 대학·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·복합 프로그램 추진비, 학생 기술·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)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: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, 세미나·포럼 개최비,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,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·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	아.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	여비, 교육활동지원비, 도서 구입비, 일반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
간접비		대학의 산업단(산학협력단 포함)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

붙임 4

지역주력산업 현황(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 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(관계부처 합동), '20.11.)

14개 시·도 지역주력산업

디지털 산업 그린산업 고부가가치화



충북
- 바이오헬스 (맞춤형 화장품, 스마트의료플랫폼)
- 지능형IT부품 (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연계)
- 수송기계소재부품 (전기차 등 미래차 지원 강화)

충남
- 스마트휴먼바이오 (건강기능성제품, 헬스케어)
- 친환경모빌리티 (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연계)
- 차세대디스플레이 (Flexible OLED/QNED)

세종
- 스마트시티 (데이터+AI 기반 서비스)
-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(자율주행실증 특구연계)

대전
-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(5G 기반 비대면서비스)
- 바이오메디컬 (바이오메디컬 특구 연계)
- 지능형로봇 (로봇-데이터 융합 서비스)

전북
- 스마트농생명·식품 (스마트농업시스템 등)
- 미래지능형기계 (친환경자동차 특구 연계)
- 탄소·복합소재 (탄소 융·복합 산업 특구 연계)
- 조선해양·에너지 (친환경선박+그린에너지)

광주
- 지능형가전 (AI 생활가전, 청정가전)
- 광융합 (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연계)
- 스마트금형 (금형설계 자동화)
- 디지털생체의료(3D프린팅 활용 서비스)

전남
-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(폐플라스틱 자원화)
- 그린에너지 (에너지신산업 특구 연계)
- 첨단운송기기부품 (e-모빌리티 특구 연계)
- 바이오헬스케어 (백신, 면역세포치료)

강원
- 천연물바이오소재 (의약품, 기능성화장품)
- ICT융합헬스 (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연계)
- 세라믹복합신소재 (액화수소 저장장치 등)

경북
- 지능형디지털기기 (그린모빌리티 전장부품 등)
- 첨단신소재부품가공 (AI 응용기반 공정 고도화)
- 라이프케어뷰티 (산업용 HEMP 특구 연계)
- 친환경융합섬유소재 (산업안전 특수섬유 등)

대구
- 고효율에너지시스템 (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)
- 디지털의료헬스케어 (스마트웰니스 특구 연계)
- 수송기기/기계소재부품 (미래차 부품 고효율화 등)

울산
- 저탄소에너지 (온실가스 감축, 해상풍력 등)
- 스마트조선 (5G 스마트조선소, 자율운항선박)
- 그린모빌리티 (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연계)
- 미래화학신소재 (게놈서비스 특구 연계)

부산
- 첨단융합기계부품 (데이터기반 스마트제조)
- 지능정보서비스 (블록체인 특구 연계)
- 친환경미래에너지 (해양모빌리티 특구 연계)
- 라이프케어 (첨단의료서비스 및 차세대 재활복지기기 등)

경남
- 첨단항공 (전기추진항공기(UAM, PAV), ICT융복합)
- 스마트기계 (무인선박, 5G특구 연계)
- 나노융합스마트부품 (나노기반 기능성필름 실증연계)
- 항노화메디컬 (빅데이터기반 비대면의료서비스)

제주
- 스마트관광 (고객 맞춤 서비스, 체험형 콘텐츠)
- 그린에너지 (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연계)
- 청정바이오 (청정자원 활용 기능성 식품 등)